

■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[별표 1]

인력지원센터의 지정기준(제6조제1항 관련)

구분	지정기준
인력	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 1. 농어업고용인력 구인·구직, 교육 또는 상담, 작업장 이동 지원 등을 수행하는 전담자가 1명 이상일 것 2. 그 밖에 인력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하는 인력이 1명 이상일 것
시설 및 장비	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 1. 농어업고용인력 구인·구직 등의 상담을 하기 위한 전화전용회선을 1회선 이상 설치할 것 2. 인터넷을 통하여 구인·구직 등의 상담 또는 일자리 정보 입력을 하기 위한 개인용 컴퓨터를 1대 이상 설치할 것 3.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을 소유 또는 임차 등의 방법으로 확보할 것